

제11.2호

행정명령

뉴욕주 비상사태 선포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은 2020년 초부터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2020년 1월 31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의료 커뮤니티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미국 전역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했기 때문에,

뉴욕은 현재 2021년 4월 이후 국가가 보지 못한 속도로 코로나19 전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19 병원 신규 입원의 비율이 증가하여 하루에 300명 이상의 신규 입원의 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 정부는 주 전체의 병원 수용력이 지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 및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고 시행하며 바이러스가 이러한 속도로 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각 시군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SarCoV2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보건기구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해 확인되고 우려 변이종이라고 명명되었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50개 주와 104개 이상의 국가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매우 높고 지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의 백신 접종은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더 강한 반면, 오미크론 감염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Kathy Hochul 본인은 뉴욕주의 주지사로서 헌법 및 뉴욕주 법령을 기초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행정명령 11호에 명시된 주 재난 비상사태를 2022년 2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을 제외하고 행정명령 11호부터 11.1호까지에 포함된 법률의 중지 및 수정을 2022년 2월 14일까지 계속 연장합니다.

- 뉴욕주 상원 및 하원이 자유 재량으로 회의하고 회의 소집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통해 법률에 의거 승인된 조치를 취하지만 2021년 법률 417장 파트 E의 조항을 준수하는 행동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까지 공직자법 7조의 행정명령 11.1에 포함된 중지.

2022년 1월 15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